

	규정	문서번호		TWP-D101	
		제정일자		1998. 03. 01.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25. 02. 27.	
		개정번호	4	페이지	1/7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과 인사
제3장	운영위원회
제4장	입학과 등록 등
제5장	교육과정의 운영
제6장	포상과 징계
제7장	학사재정
제8장	보칙

부칙

작성부서	평생교육원	제정일자	1998. 03. 01.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평생교육원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2/7

[illegible]

	규정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문서번호		TWP-D101	
		제정일자		1998. 03. 01.	
		개정일자		2025. 02. 27.	
		개정번호	4	페이지	3/7

[전면개정 2018.05.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교육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삭제 2018.05.04.>

제3조(위치) 교육원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의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과정설치)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정부의 인.허가 조건 및 관계법령과 정부정책에 의한 이 대학교의 필요에 따라 각 과정을 설치한다.

제2장 조직과 인사

제5조(조직의 구성) ① 교육원에는 원장과 각 과정별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를 둔다.

② 원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육원에는 센터의 행정업무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주임교수) ① 교육원에는 교육과정별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주임교수는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교원) ① 교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과 외부전문인사를 겸임 또는 시간강사로 한다.

② <삭제 2018.05.04.>

제8조(사무직원) <삭제 2018.05.04.>

	규정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문서번호		TWP-D101	
		제정일자		1998. 03. 01.	
		개정일자		2025. 02. 27.	
		개정번호	4	페이지	4/7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위원회 구성) ① 교육원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인의 교내·외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전문분야 경력자를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원장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

1. 교육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과 및 강좌의 개설과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학습비, 수료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 운영과 학습생 상벌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입학과 등록 등

제12조(입학자격) 교육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학력과 관련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13조(등록시기) 교육원의 학습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전형방법) ① 교육원의 학습자 선발은 각 교육과정별 입학원서 접수순과 학습 수용능력 등 서류전형을 기초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습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규정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문서번호		TWP-D101	
		제정일자		1998. 03. 01.	
		개정일자		2025. 02. 27.	
		개정번호	4	페이지	5/7

제15조(등록과 반환) ① 교육원의 학습자는 각 과정별로 소정의 학습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른다.

제16조(장학금) ① 학습생활의 수범과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 산업체 근로자로서 직장 단위별로 20명 이상의 교육생이 일시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산업체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감면액을 장학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습자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과정의 운영

제17조(교육과정과 운영)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수시로 정하며 그 운영은 각 과정별로 추진한다.

② <삭제 2018.05.04.>

③ 주임교수는 당해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편성 및 운영을 총괄하.

제18조(학습기간 및 모집) ① 교육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별로 결정하고 학습생은 수시로 모집한다.

② 학습생 모집에 필요한 홍보는 각 과정별 정규 소속전공 또는 교육원의 주관으로 활동, 모집하며 원장은 이를 총괄한다.

제19조(교육만족도 평가 및 활용) ① 교육과정을 수강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은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5.02.27.>

② 평가 결과는 강사의 재임용 여부, 교육과정 개선, 교육원의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02.27.>

③ 교육원은 매년 2월 말 까지 교육만족도 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신설 2025.02.27.>

제20조(수료와 수료증) 교육원은 교육과정별로 설치된 소정의 강좌를 70% 이상 이수한 자에 대

	규정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문서번호		TWP-D101	
		제정일자		1998. 03. 01.	
		개정일자		2025. 02. 27.	
		개정번호	4	페이지	6/7

하여 그 수료(또는 졸업)를 인정하고 수료증(또는 졸업증서)을 수여한다. 다만, 자격취득과정 등 타 기관과 연계하여 설치된 소정의 강좌는 기 기관에서 요구하는 이수수준에 대하여 그 수료(또는 졸업)를 인정하고 수료증(또는 졸업증)을 수여한다.

제6장 포상과 징계

제21조(포상)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학습생에 모범이 되며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삭제 2018.05.04>

제7장 학사재정

제23조(회계연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4조(수입원)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자의 수강료 (입학금 포함)
2. 수탁 교육의 훈련 지원금 (위탁훈련시)
3. 기타 수입 또는 대학 보조금

제25조(강사료) 교육원의 출강에 따른 강사료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8장 보칙

제2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방침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D101	
		제정일자		1998. 03. 01.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개정일자		2025. 02. 27.	
		개정번호	4	페이지	7/7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